

# 2019년도 제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 I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9. 6. 24.(월요일), 16:00
- 장 소 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석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
  - 심의위원 : 강상욱(분과위원장 대행), 백대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.....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19-92회)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.....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..... 분과위원장

**<의결안건>** ※ 안건 검토 보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4. 폐회선언 ..... 분과위원장

## II. 회의내용 및 결과

### 1. 의결안건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,700건(안건번호 제2019-53315호~55056호)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

### Ⅲ. 회의 의사록

#### 1. 개회선언
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98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

#### 2. 전차(제2019-92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회의록 4쪽의 복제·전송자명, 회사명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A 위원 : 전차 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, 게시자명과 회사명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
- B 위원 : 의견에 동의함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, 게시자명, 회사명을 비실명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

### 3. 안전상정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성원영 전문위원 :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-53315호~55056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,700건임  
(보호원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19-53315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,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‘카카오페이지’에서 판매 중인 어문저작물의 이미지를 캡처한 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 
심의안건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압축파일 다운로드하면 다수의 jpg. 파일이 있는데, 이미지 크기에 비추어 볼 때 모바일 기기로 캡처한 것으로 추측됨  
캡처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
  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19-53315호 웹하드 사이트의 어문저작물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
  - A 위원 :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며 이견 없이 가결 의견임
  - B 위원 : 같은 생각임
  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안전번호 2019-53315호 해당 저작물은 ‘카카오페이지’에서 현재 연재중인 어문저작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만장일치로 가결함
  - 성원영 전문위원 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

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19-53316호~55056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

- A 위원 : 불법 복제된 음악, 게임, 프로그램, 만화 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송된 것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  
- B 위원 : 시정조치 가결 의견에 동의함
  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53316호~5505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53315호~55056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,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”

#### 4. 폐회 선언

- o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

2019년 제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7. 1.

분과위원장 대행 강상욱

위원 백대용